

## 붙임 2

##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(면접시험)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제공 내용	비고
지체장애	상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전담도우미 지원</li> <li>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</li> <li>관련서식 확대 제공</li> <li>면접자료 작성시간 1.5배 연장</li> </ul>	기존 1~6급
	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전담도우미 지원</li> <li>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</li> </ul>	기존 1~6급
뇌병변장애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전담도우미 지원</li> <li>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</li> <li>관련서식 확대 제공</li> </ul>	-
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면접자료 작성시간 1.5배 연장</li> <li>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</li> </ul>	기존 1~3급
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</li> </ul>	기존 4~6급
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</li> </ul>	
시각장애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전담도우미 지원</li> <li>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</li> <li>관련서식 확대 제공</li> </ul>	-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</li> <li>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면접자료 작성시간 1.5배 연장</li> <li>음성지원 컴퓨터</li> <li>점자정보단말기</li> </ul>	기존 1~2급 기존 3급 2호 기존 4급 2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 응시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</li> </ul>	기존 3급 12호
청각장애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</li> <li>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 등) 지원</li> <li>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</li> <li>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</li> <li>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</li> </ul>	기존 2~6급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/ 일시적 신체장애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</li> </ul>	-

※ 음성지원컴퓨터 사용,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, 면접자료 작성시간 1.5배 연장을 위한 장애 증상 증빙은 필기시험 편의제공 시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